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12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7. 6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6. 21(목) 제13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6. 6. 2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)

가. 제안이유
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 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.

나. 주요골자

- 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잉 여 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	11,419	10,277	1,142

-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	11,683	11,419	264

○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	10,277	775	731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잉 여 금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7,488	5,537
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105억 453만원임

나.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9,760	446

-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102억 672만원으로 예산액대비 97.1%로
수납액은 97억 6,07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.9%이고
미수납액은 4억 4,601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.2%임

다.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7,488	5,389	459

○ 세출부분은

예산현액 133억 3,664만원 대비 56.1%인 **74억 8,841만원**을 지출하였고,

이월액은 **53억 8,915만원**으로 예산현액 대비 57.0%이고,

세출불용액은 **4억 5,907만원**으로 예산현액 대비 4.3%입니다.

라. 검토의견

○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

- 세입예산은 조사결정,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,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
- 상수도 급수 수익은 **27억 3,985만원**, 총괄원가는 **67억 1,315만원**이므로 결함액은 **39억 7,329만원**이며
요금수준의 인상요인 **145.02%**가 발생한 것은 향후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로 남게 되었음.

○ 고정자산을 관리함에 있어

- 노후관 개량공사시 대체된 노후관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
-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

○ 가동설비자산은 각 과목별로 대장을 비치하여 증감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

○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 :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
세출결산승인안 끝.**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수납액 (B)	지출액		잉여금 (D)	잉여금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419,779	148.62%	10,277,592	133.76%	1,142,187	14.86%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 (D)	미수납액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합계	7,683,680	11,683,795	152.06%	11,419,779	148.62%	264,016	3.43%
현년도	7,320,848	7,038,941		6,781,898		257,043	
전기미수금	50,000	230,876		223,903		6,973	
전기이월액	312,832	4,413,978		4,413,978		0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C/B (%)		이월액 (D)	D/B (%)		불용액 (E)	E/B (%)	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784,827	10,277,592	87.21%		775,930	6.58%		731,305	6.21%	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계	건설개량 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	1,142,187	381,497	394,433	-	-	366,257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수납액 (B)	지출액		잉여금 (D)	잉여금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419,779	148.62%	10,277,592	133.76%	1,142,187	14.86%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 (A)	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		
			B/A (%)	(C)	C/A (%)	(D)	D/A (%)
합계	7,683,680	11,683,795	152.06%	11,419,779	148.62%	264,016	3.43%
현년도	7,320,848	7,038,941		6,781,898		257,043	
전기미수금	50,000	230,876		223,903		6,973	
전기이월액	312,832	4,413,978		4,413,978		0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이월액		불용액 (E)	E/B	
				C/B (%)	D/B (%)		(%)	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784,827	10,277,592	87.21%	775,930	6.58%	731,305	6.21%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건설개량 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,142,187	381,497	394,433	-	-	366,257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취 불임”
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 : 불임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35조(결산) ①관리자는 매 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②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”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